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판 결

사 건 2025고정296 절도  
피 고 인 박관희 (510722-1000000), 고물수집  
주거 고양시 일산서구 송포로 000번길  
등록기준지 충북 청원군 00면  
검 사 정선철(기소), 권다솜(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전찬호(국선)  
판 결 선 고 2025. 8. 13.

### 주 문

피고인은 무죄.

### 이 유

#### 공소사실

『2025고정296』

피고인은 2025. 2. 21. 04:45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1275번길 60-21, 이마트24 일산라페스타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서O균이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 시가 약 200만 원 상당의 대형 테이블 2개 및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소형 테이블 1개 등 합계 420만 원 상당의 피해품 총 3개를 트럭 적재함에 싣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 판단

### 1. 관련법리

형사재판에 있어서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307조), 이는 증거능력 있고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에 의해서만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을 뜻한다. 나아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유죄의 인정은 범행 동기, 범행수단의 선택, 범행에 이르는 과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등 여러 간접사실로 보아 피고인이 범행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할 만큼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명이 있어야 하고, 피고인이 범행한 것이라고 보기에 의심스러운 사정이 병존하고 증거관계 및 경험법칙상 위와 같이 의심스러운 정황을 확실하게 배제할 수 없다면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된다는 것이 헌법상의 원칙이고, 그 추정의 번복은 직접증거가 존재할 경우에 버금가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도14645 판결 등 참조).

### 2. 본건의 경우

#### 가. 피고인의 변소

해당 테이블들은 쓰레기통 옆에 있었고, 버린 물품이라고 생각하여 가지고 온 것이다. 절도의 범의가 없었다.

#### 나. 판단

피고인이 위 테이블들을 가져간 사실 자체는 분명하다. 과연 피고인이 버려진 물건이라고 생각하고 가져왔는지, 절도의 고의로 가져왔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해당 테이블들은 새 제품이 아니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약 10년 정도가 경과된 물품인 점, ② 피해자는 위 물품들을 쓰레기통 옆에 놔두었고, 위 물품들이 놓여 있는 위치는 피해자가 운영하던 편의점과는 약간의 거리를 두고 있었던 점, ③ 피해자는 위 물품에 ‘가져가지 마세요’라고 적은 a4 용지를 붙여두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cctv상으로 그러한 용지는 제대로 확인되지 않고 있는 점, ④ 피해자 역시 그러한 용지를 못 보고 가져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술하는 점(녹취서 요지 6쪽), ⑤ 피해자는 테이블이 없어진 바로 다음날이 아니라, 며칠 이상 지난 이후에 피해 신고를 하였고, 신고 당시 테이블의 수량도 제대로 모른 채 신고를 하는 등 위 테이블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가져가지 마세요”라는 종이가 붙어져 있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절도의 범의로 위 테이블을 가져갔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죄사실의 증거가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김주완            \_\_\_\_\_